
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태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14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27.

발 의 자 : 김태선 · 박홍배 · 허성무
윤후덕 · 김주영 · 김병주
손명수 · 허 영 · 이용우
박 정 · 강득구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 대응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
그런데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감소 대응정책을 연구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마다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.

이에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통하여 시·도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인구 감소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(안 제30조제3항 신설 등).
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시·도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·운영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공기관의 범위, 시·도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와 제3항에 따른 시·도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는 인구감소 대응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상호 연계·협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0조(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· ② (생 략)	제30조(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③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시·도인구감 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·운영 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공 기관의 범위, 시·도인구감소지 역대응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 다.</u>
<u><신 설></u>	<u>④ 제1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대응센터와 제3항에 따른 시· 도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는 인 구감소 대응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상호 연계 · 협력하여야 한다.</u>